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10호
2026. 2. 20.(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조 례(2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52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53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조례 제1954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55호)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1956호)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957호) 4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58호)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59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60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61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조례 제1962호) 5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조례 제1963호)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제1964호) 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조례 제1965호)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66호) 8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967호) 8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68호) 8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69호) 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0호) 9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971호) 9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조례 제1972호) 9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973호) 99

공 고(1)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224호) ... 10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후단을 신설함(제12조제6항).
- 나.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제12조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
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또는 전문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전산시스템 프리즘(www.prism.go.kr)(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프리즘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4. 기술·전산개발·디자인개발·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 등의 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6.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관련 소관 실·국·소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 서류 일체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 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5조(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6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정책연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년 월 일)

우선 순위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심 사 의 견	비고
		원 안 가 결	조건부 승 인	부 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

용역명	
-----	--

제 출 자	
제 출 일	년 월 일

<p>용역의 개요</p>	<p>○ 용역명: ○ 용역기간:</p>				
<p>용역 사업비</p>	<p>○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사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p>				
	<p>요구예정 시기</p>	<p>회 계 별</p>	<p>정책단위</p>	<p>편 성 목</p>	
	<p>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p>	<p>일반회계 ○○특별회계</p>			
<p>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p>	<p>○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input type="checkbox"/> 위탁형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 자문형</p>				
<p>기존 용역과 유사·중복 성</p>	<p>○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p>				
<p>담당자 등</p>	<p>소속부서</p>	<p>팀장</p>	<p>담당자</p>	<p>전 화</p>	<p>비 고</p>

영역명

영역의 목적과 필요성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영역 기간:

영역 수행 방법

-
-

유사 영역 사례(최근 5년간)

-
-

영역결과 활용 계획과 기대효과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역 개요	○ 용역명: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용역수행자: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인자 ○○팀장 주관부서장	비고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 사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정책연구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정책연구 용역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용역기관 선정방식	1. 입찰()	2. 수의()	용역기간	~ (개월)			
정책연구용 역 주요결과							
평가항목	평가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정 책 연 구 용 역 명		용 역 기 관 / 책 임 연 구 원	
용역발주부서/ 주 관 부 서 장		담 당 공 무 원	
용 역 기 간		용 역 비	천원
용 역 목 적			
주 요 내 용			
활 용 목 적			
실 적 및 활 용 방 안			
기 대 효 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4조)
-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의견청취,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결과공개·결과활용에 관한 사항(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 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업 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 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대덕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회의 결의안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친선결연 체결) ① 친선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정체결의 성립)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0조(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친선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덕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교류협력 사업,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친선결연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마. 교류촉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협약에 따라서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구 분	위 치
회 덕 다 목 적 체 육 센 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64 (읍내동)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중리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41번길 28, 2층 (중리동)
석봉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3층 (석봉동)
오정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6번길 47-10, 3층 (오정동)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X-게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X-게임장 (법동)
로 하 스 산 호 빛 공 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 촌 전 천 후 게 이 트 볼 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 청 수 상 레 포 츠 센 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 하 스타 위 1 어 린 이 스 포 츠 센 터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 암 야 구 장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 9-7번지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중대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50,000	75,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함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37,500	62,500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대덕문화체육관 및 을미기 체육공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1회 (1일 4시간)	62,500	93,800		
	체육경기 외	1회 (1일 2시간)	75,000	125,000		
		1회 (1일 4시간)	125,000	187,500		
축구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2시간	3,000	5,000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평일 조조시간(06:00~09:00)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총사용료 기준	
대덕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00,000	30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체육경기 외	1회 (1일 4시간)	300,000	450,000	
	다목적실	1회 (1일 4시간)	40,000	60,000		
풋살경기장	체육경기 등	1면, 1시간	12,500	25,000	○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조명 사용료 제외)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외	1회 (1일 8시간)	1,300,000	1,800,000		
덕암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 덕 문 화 체 육 관 중리근린공원국민체육센터 석봉국민체육센터 오정국민체육센터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 덕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헬스장과 다목적실 시설 사용료의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50,000			
		1회 이용	2,5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500			○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4,000			○ 조명 사용 시 3,000원 추가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조명 사용료 제외)
		주말 (1면, 1시간)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6,300	5,000	3,800	○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 「주민등록법」상 대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일 경우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	17,000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대 수 청 상 레포츠센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 입장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제한함 ○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함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원)+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관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 육 외 행 사		1회	40,000	20,000	
녹 화 또 는 행 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 는 행 사촬 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애드벌론 및 유사물 계약에 의한 광고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별도 협약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해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별도 협약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해 규정함(제11조제5항).
- 나.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함(별표 1).
- 다. 시설별 사용료에 신규 체육시설을 추가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덕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대덕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대덕구 미래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덕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주체성을 바로 세우며, 대덕구의 인물, 지리,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생활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체적 연구하는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학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대덕학 연구 및 진흥과 관련된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대덕학 관련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덕학 연구 및 진흥사업)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덕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3.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4. 대덕학 확산·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5. 대덕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사업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덕학 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학 연구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덕학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대덕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대덕학 진흥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대덕학 관련 연구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덕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덕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서 재직 중이거나 대덕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덕구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덕구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덕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대덕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다. 대덕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라. 대덕학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생존수영교육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서관법」 제3조제2호”를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서자료”를 “자료”로, “동일도서”를 “동일 자료”로, “같은도서”를 “같은 자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학교,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 범위 및 한도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 및 제적 목록은 제17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정보 공유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폐기”를 “폐기 및 제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과 폐기자료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도서관 자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 폐기·제적 및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함(제15조의2 및 제17조).
- 나. ‘도서관 자료’를 ‘자료’로 약칭한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의 용어를 정비함(제1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직 공무원의 생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후단을 신설함(제23조제9항).
- 나.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제23조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전수 녹음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정신적 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구청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

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지원구분		근거	지원내용	세부기준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등		조례 제6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예산의 범위 내
심리상담		조례 제8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예산의 범위 내
의료비		조례 제8조제2호	연 100만원 범위 내	1. 병원 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료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조례 제8조제3호	4시간 이내	피해 상황 및 정도에 따라 부서장 판단 결정
법률 지원	법률상담	조례 제8조제4호	고문 변호사 상담	
	소송비용	조례 제8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조례 제8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사업		조례 제8조제6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예산의 범위 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신설함(제4조).
- 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
- 다.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
- 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제4조의2).
 - (당초)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
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라.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사.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아. 위원회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방문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③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규정함(제4조).
- 라. 사업,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바. 방문인력 안전확보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사.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
(제4조의2).
- (당초)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 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사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

봄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3.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자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
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제3조).
 - (당초)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마. 지원취소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녹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제5조).
 - (당초)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6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신설함(제4조제1항제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방첩사령부 방첩관

제7조 중 “제1970부대 4대대장”을 “관할 대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기재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군부대 명칭이 실제 사용되는 명칭과 달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 규정된 관할 군부대 명칭을 정비함(제3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
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
(제3조의2).
- (당초)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변경) 존속기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대덕구민 및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보존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교육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제5조).
- 라.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마. 홍보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9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
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다른 법령 등
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존 취약계층 노인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임산부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예방접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다.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라.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22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2. 20. ~ 3. 6.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3.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3.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안*호	177하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30*동 1***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원	336도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12, 1**동 ***호 (진우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윤	356마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1**동 ***호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송*라	311마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동 1***호 (법동, 한마음아파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주 식 회 사 수***	71러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가구마을길 3*-*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석*태	43두8***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66번길 **, *층(문창동)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김*진	48오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7번안길 46-1, ***호(신탄진동, 베스트빌)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
김*웅	66도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25번길 59, ***호(갈마동, 행운빌)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4,200	폐문부재